



산재보험 재심사재결 사례

○○가구 도장공이 상병명 “1)우두정 후두골 골절, 2)뇌좌상, 3)우두정 후두부 뇌경막상 혈종, 4)뇌지주막하 출혈, 5)우 후두부 두피차상 및 모상건막하 혈종, 6)양안, 상하안검부 피하출혈, 7)외상후 자극장해”로 요양하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91-456호 91. 9. 26.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이○○

주소 : 구리시 수택동

원 처 분 청 :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로자 성명 : 홍○○

주소 : 구리시 수택동

소속 : ○○가구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5. 8.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홍○○”(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가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 11. 13. 작업중 피재되어 최초 상병명 “1)우두정 후두골 골절, 2)뇌좌상, 3)우두정 후두부 뇌경막상 혈종, 4)뇌지주막하 출혈, 5)우 후두부 두피차상 및 모상건막하 혈종, 6)양안, 상하안검부 피하출혈”로 구리병원에서 요양하다가 1989. 7. 15.부터 “외상후 자극장해”로 청량리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 중 1990. 12. 29. 자택에서 사망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이 산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처분청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사인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 요양관리중 발생 악화된 상병이 아니며 기존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피재자가 기존의 간기능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2년여에 걸친 치료 과정 중 다량의 약물투여로 간기능이 약화되었고 사체검안서는 ‘추정’소견일뿐 업무상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최초상병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 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8. 22. 이○○)
2. 답변서(1991. 8. 26. 원처분청)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7. 2. 김○○)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정서 사본(1991. 5. 8. 원처분청)
5.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1991. 3. 12. 이○○)
6. 재해조사복명서 사본(1991. 5. . 원처분청)
7. 사체검안서 사본(1990. 12. 31. 구리병원)
8. 소견서 사본(1990. 4. 29. 구리병원)
9. 소견서 사본(1991. 4. 5. 청량리정신병원)
10. 소견서 사본(1991. 5. . 원처분청 자문의)
11. 소견서 사본(1991. 6. . 노동부 자문의)
12.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가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 11. 13. 업무상 피재되어 최초 상병명 “1) 우두정 후두골 골절, 2) 뇌좌상, 3) 우두정 후두부 뇌경막상 혈종, 4) 뇌지주막하 출혈, 5) 우 후두부 두피차상 및 모상건막하 혈종, 6) 양안, 상하안검부 피하출혈” 등으로 구리병원에서 요양하다가 1989. 7. 15.부터 “외상후 자극장애”로 청량리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중 1990. 12. 29. 자택에서 구리병원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 간부전증, 추정, 중간선행사인 : 간경화증 및 복수, 선행사인 : 간염 및 2년전 두부 손상 추정”으로 사망하였는 바, 동병원 소견서상 “1988. 11. 13. 개두술 당시의 간기능 검사상 간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상이전부터 간기능장애(간경화 추정)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외상후 자극장애’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될수 없으나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장기간 간경화증이 지속하여 최근에는 부종과 복수증을 동반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및 청량리정신병원 소견서상 “통원치료중 병리검사에서 사인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나쁜 소견이 발견되었고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워 의료보험치료를 권고 하였으며 요양중의 상병상태로 보아 직접적인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지 않다고 볼수 있으나 다만 개인 위생소홀, 무기력, 의욕상실 등으로 조기에 충분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으나 그 치료시기를 잊은 상태로 보임” 등의 소견과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서상 “피재자의 사인은 최초 상병명과 요양관리상의 요양에 의한 사망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됨”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재해발생 이전부터 간기능 장해(간경화증 추정) 상태였고 직접사인 : 간부전증 추정과 중간선행사인 : 간경화증 및 복수는 재해 당시의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희박한 상태임”의 소견 등 이상 의학적 소견과 요양경위 등을 종합 판단컨대 피재자의 경우 재해이전부터 있어온 간기능장애의 기준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뿐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관리상의 요인이 기준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사망이라 볼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뿐 이를 취소할만한 이유를 발견할수 없다.



○○콜택시(주)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상병명 “1)혈흉 및 폐타박 우측, 2)복부둔상, 3)척수손상, 4)뇌진탕, 5)제11흉추 압박골절, 6)우측제4, 5중수골 골절, 7)우측 견갑골 골절”로 통원요양 중 자택을 나와 대로변에서 보행연습을 하다 졸도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91-540호 91. 10. 28. 기각)

재결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조○○

주소 : 양천구 목2동

원처분 청구인 :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양○○

주소 : 양천구 목2동

소속 : 주식회사 ○○콜택시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5. 18.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양○○”(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콜택시(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1. 5.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상병명 “1)혈흉 및 폐타박 우측, 2)복부둔상, 3)척수손상, 4)뇌진

탕, 5)제11흉추 압박골절, 6)우측 제4,5중수골 골절, 7)우측 견갑골 골절”로 중앙대부속병원에서 통원요양 중 1991. 1. 11. 보행연습을 하다가 발병 졸도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 가료중 “뇌출혈”로 사망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청구인이 산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처분청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청은 사인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당초 업무상 재해 및 상병과 직·간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재자는 고혈압의 기준 질환자로서 최초 재해로 인하여 지속적인 하지 부전마비 증세가 있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 왔고 당초 상병의 치료를 위해 보행연습을 하던 중 뇌출혈이 유발되었으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본건 재해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9. 25. 조○○)
2. 답변서(1991. 10. 7. 원처분청)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8. 29. 변○○)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정서 사본(1991. 5. 18. 원처분청)

5.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1991. 5. 15. 조○○)
6. 재해조사복명서 사본(1991. 5. 10. 원처분청)
7. 사망진단서 사본(1991. 1. 14. 한강성심병원)
8. 진단서 사본(1990. 12. 14. 중앙대학교부속 병원)
9. 소견서 사본(1991. 4. 15. 중앙대학교부속병원)
10. 소견서 사본(1991. 4. 24. 한강성심병원)
11. 소견서 사본(1991. 5. . 원처분청 자문의)
12. 건강진단개인표 사본(1988~1989년 신화병원)
13.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콜택시(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1. 5. 교통사고로 업무상 피재되어 최초 상병명 “1) 혈흉 및 폐타박 우측, 2) 복부둔상, 3) 척수손상, 4) 뇌진탕, 5) 제11흉추 압박골절, 6) 우측 제4, 5중수골 골절, 7) 우측 견갑골 골절”로 중앙대부속병원에서 통원요양중 1991. 1. 11. 자택을 나와 대로변에서 보행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가료중 1991. 1. 13.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뇌간마비, 중간선 행사인 : 뇌부종, 선행사인 :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동병원 소견서상 “의식혼수 상태에서 내원하여(혈

압 150/90) 검사상 뇌교에 지대혈종이 발견되었고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에 의한 경우가 많고 기타 뇌 혈관 기형 등에 의한 경우가 있으나 기존 교통사고에 의한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알수 없음”의 소견인 바 1990. 12. 14.자 중앙대부속병원 진단서상 “지속적인 양측 하지 부전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음” 이외의 특이소견이 없고 동병원 소견서상 “뇌출혈 자체가 자발성인지 분명치 않은 상태이나 자발성 뇌출혈인 경우에는 최초 상병명과 인관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보행 연습중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은 업무상 재해가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등의 소견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의 경우 1988~1989년도에 시행한 건강진단 개인표상 “160/110~180/110mmHg”的 고혈압의 기준증이 자연 경과 과정에 의하여 약화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뿐 당초 재해 또는 요양과정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볼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

